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753249	
등록번호	110111-7532496	
상 호	주식회사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2021.03.05 변경 2021.03.11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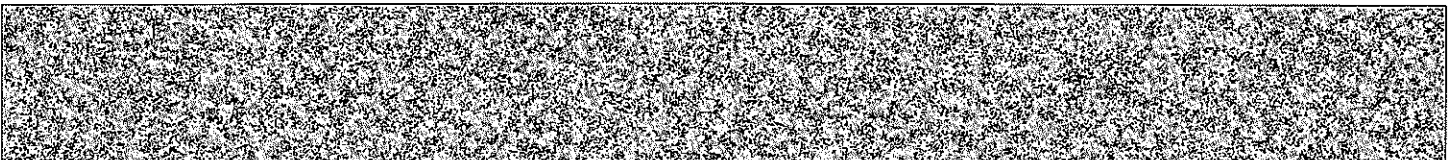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 주	금 300,000,000 원	
보통주식	6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60,000 주	금 5,300,000,000 원	2020.09.12 변경
보통주식	480,000 주		2020.09.14 등기
채2종종류주식	58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 주	금 5,000,000,000 원	2020.12.03 변경
보통주식	420,000 주		2020.12.03 등기
채2종종류주식	58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60,000 주	금 5,300,000,000 원	2021.06.12 변경
보통주식	480,000 주		2021.06.14 등기
채2종종류주식	58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780,000 주		
보통주식	680,000 주	금 8,900,000,000 원	2022.02.18 변경
채1종종류주식	500,000 주		2022.02.18 등기
채2종종류주식	6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4,280,000 주		
보통주식	680,000 주	금 21,400,000,000 원	2022.07.02 변경
채1종종류주식	3,000,000 주		2022.07.04 등기
채2종종류주식	6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4,280,000 주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75324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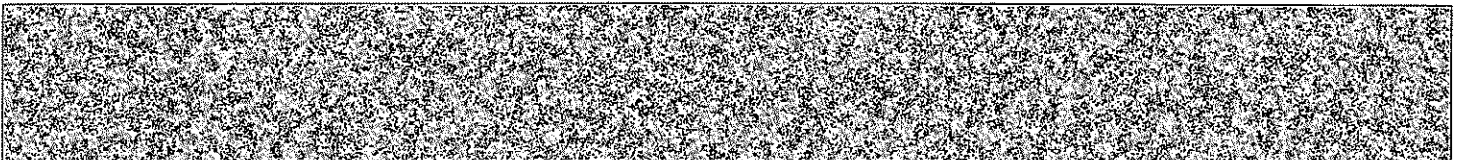
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부동산
1. 부동산개발사업
1.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1. 증권, 채권
1.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영주 9602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04동 304호(평촌동, 초원이파트)	
사내이사 이영주 960222-*****	
2020년 07월 23일 주소삭제	2020년 07월 29일 등기
2023년 03월 24일 사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감사 최준영 831222-*****	
2023년 03월 24일 임기만료	2023년 03월 2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홍수민 930929-*****	
2020년 07월 23일 취임	2020년 07월 29일 등기
2023년 03월 24일 사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박종근 811117-*****	
2020년 07월 23일 취임	2020년 07월 29일 등기
2023년 03월 24일 사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이영주 9602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04동 304호(평촌동, 초원이파트)	
2020년 07월 23일 취임	2020년 07월 29일 등기
대표이사 이영주 9602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1, 1005호(구의동, 비바힐스 강변)	
2022년 12월 02일 주소변경	2022년 12월 15일 등기
2023년 03월 24일 사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사내이사 이영주 960222-*****	
2023년 03월 24일 취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2023년 09월 26일 사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감사 한재용 830916-*****	
2023년 03월 24일 취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2023년 09월 26일 사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홍수민 930929-*****	
2023년 03월 24일 취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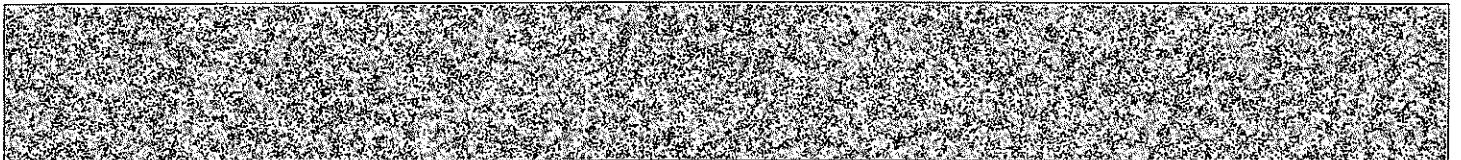


등기번호	753249
기타비상무이사 박종근 811117-***** 2023년 03월 24일 취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대표이사 이영주 96022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51, 1005호(구의동, 바비힐스 강변 +) 2023년 03월 24일 취임 2023년 03월 28일 등기 2023년 09월 26일 사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이규석 680414-***** 2023년 09월 26일 취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감사 임후섭 840823-***** 2023년 09월 26일 취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이규석 680414-*****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 2, 917동 208호(부림동, 주공아파트) 2023년 09월 26일 취임 2023년 10월 06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종류주식

- ① 회사는 오천만주(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단, 아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당해 사업연도 포함)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제2종 종류주식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 ②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 ③ 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매 결산기에 배당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7.0%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1종 종류주식에 최우선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8.0%에 달할 때까지만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2종 종류주식에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단, 제1종 종류주식 보다는 후순위임)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3. 제2호까지의 배당 후 잔여 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을 말함)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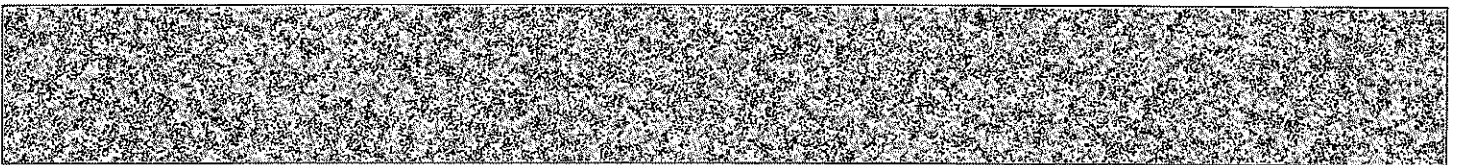
등기번호	753249
------	--------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 ⑤ “매각차익”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각차익 = 부동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 매각부대비용 – 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수취하는 매각보수 - 취득원가
- ⑥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6.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0년 09월 12일 설정 2020년 09월 14일 등기

제1종종류주식

- ① 회사는 오천만주(50,000,000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단, 아래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당해 사업연도 포함)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제2종 종류주식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 ②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 ③ 회사는 해산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때 결산기에 배당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7.0%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1종 종류주식에 최우선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누적 배당률이 연평균환산 8.0%에 달할 때까지만 배당한다. 부연하면, 어느 사업연도의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은 이월되어(단, 이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시 제2종 종류주식에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단, 제1종 종류주식 보다는 후순위임) 배당한다(누적적, 비참가적 배당임).
 3. 제2호까지의 배당 후 잔여 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등기번호	753249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일(일부 매각을 포함하되, 매매계약의 거래 종결일을 말함)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이익을 배당한다.

1. 최우선으로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2.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누적적 미배당분 포함)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매각차익의 10%씩을 각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매각차익의 80%를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4.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5.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6.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
7. 제6호까지 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각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⑤ “매각차익”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매각차익 = 부동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 매각부대비용 – 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수취하는 매각보수 - 취득원가

⑥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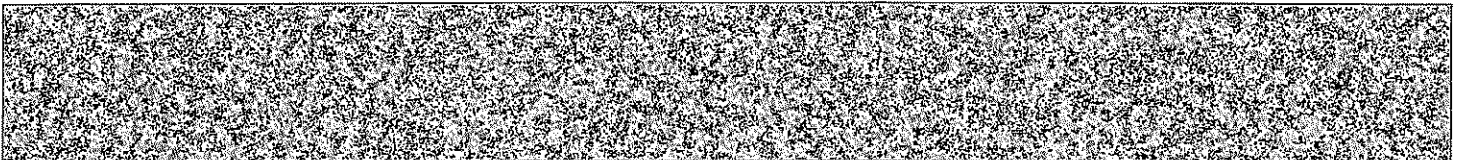
1. 회사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2.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누적된 미배당분’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4.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5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5.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단, 제4항 제6호에 따라 기 배당받은 금액은 공제한다)에 달할 때까지 분배한다.
6. 제5호까지 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 전액은 보통주식에 분배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실권주의 배정 포함)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22년 02월 18일 설정 2022년 02월 18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2022년 05월 16일 변경 2022년 05월 23일 등기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등기번호	753249
------	--------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0년 06월 24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20년 06월 24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3년 10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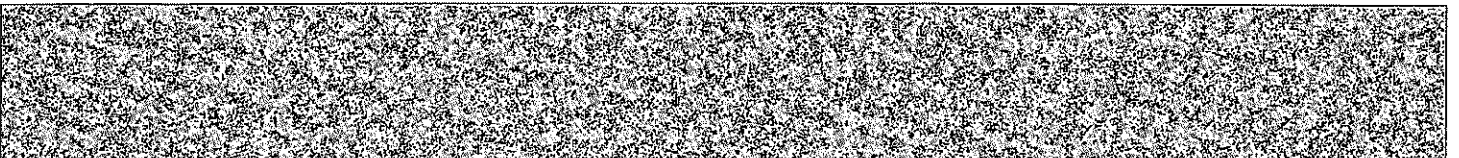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0205016601060120110322009241203451791J1Y1M00101 2

발급확인번호 2494-AAXF-NZFR

발행일: 2023/10/16